

의안
번호

1060

【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14. 6. 2.(월)
- 나. 제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4. 6. 9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4. 6. 16.(월)

2. 개정이유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분납이자율 인하 범위를 정하고,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개정 시행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며,
- 다.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립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 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적용토록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·대부, 변상금 및 과오납금반환가산금 등 분납이자율 인하
(안 제34조제2항, 제37조제1항에서 제7항까지, 제63조제1항, 제67조)
 - 대부료, 매각대금, 변상금, 과오납금반환가산금 분납이자율 적용 : (개정 전) 6% 적용 → (개정 후) 4% 적용
 - 매각대금(공공기관, 외국인투자기업) 분납이자율 적용 : (개정 전) 3~4% 적용 → (개정 후) 2% 적용

나. 공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 대상 확대로 주민불만해소 및 규제 완화 (안 제39조제4호, 제6호)

-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연도를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완화 (안 제39조제4호, 개정)
-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점유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(안 제39조제6호, 신설)

다. 사립학교 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1,000분의 25의 대부료를 적용하도록 신설

(안 제27조제3항제4호)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(신설)

라.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중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심의회 업무의 명확한 기준 마련

(안 제4조제1항, 제2항)

-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(신설)

마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등 정비

- 용어, 맞춤법, 띄어쓰기 등 정비

4. 관련법령

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나. 「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

다.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(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-5423호)

5. 검토의견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분납이자율 인하 범위를
 - 대부료, 매각대금, 변상금, 과오납금반환가산금 분납이자율은 6% → 4%로
 - 매각대금(공공기관, 외국인투자기업) 분납이자율은 3~4% → 2%로 적용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사립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적용토록 조례 개정하여 반영하고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「의하여」를 「따라」 등 용어 수정과 맞춤법,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등
-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에 적합하고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.